

2

그 當爲性 어디에

背山臨海 立地的으로 妥當

朴 光 淳 〈全南大 經濟學科 教授〉

머리말

어촌은 일반적으로 背山臨海, 즉 뒤는 가파른 산과 앞에는 넓고 깊은 바다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입지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와같은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定住空間으로서의 어촌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거주공간(택지와 터밭)이 좁아 집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마을 안에서의 이웃간의 담장은 대단히 낮아 隣接性이 강하다. 둘째로, 그 와는 대조적으로 마을과 마을과의 담장은 아주 높다. 다시 말하면 一島一村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一島多村인 경우에도 섬안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간의 隔絕性과 고립성이 크다. 셋째로, 이로 말미암아 섬안 및 부락내

흔인률이 높아, 한 마을이 모두 친·인척으로 맺어져 있다. 넷째로, 어민들의 생산의 터인 어장은 쪼개나누기 어렵다고 하는 不可分割性으로 말미암아 마을의 總有로 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이상의 특질로 말미암아 어촌은 고대로 어업공동체라는 생활의 有機體로 편성되어 기능해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꽤 적한 복지어촌이라고 할 때에는 다음 3가지 여건을 갖춘 경우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소득이 높아야 하고, 둘째로,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셋째로 소득이 골라야 한다. 이와같은 3가지 조건은 어업공동체의 기능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어촌의 지리적 조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협동생산과 공동판매라는 경제생활의 共同化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꽤 적하고 아득한 복지어촌 건설의 기반이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아래에서 우리나라 어촌에 뿐리깊게 존립하고 있는 어업공동체의 모습과 그 전개상, 어업공동체의 존립과 해체의 조건,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 공동체는 살아남아야 할 존재인가 등에 관해서 개관해 보고자 한다.

어업공동체의 존립· 해체의 조건

왜 우리 어촌에 공동체가 줄기차게 존립하고 있는 것일까. 그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가 형성되고 해체되는 일반적 조건에 관해서 살펴보자. 넓은 의미의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원생적인 인간관계를 축으로 해서 형

성된 共同組織이다. 그러나 경제적 의미로 해석할 생산수단의 공유(총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조직을 지칭한다. 따라서 어업공동체는 어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적생산수단인 어장의 총유와 한 마을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된 생활유기체를 지칭한다.

그리면 이와같은 공동체가 형성·존립하게 되는 기본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면서 형성되어 존립하게 된다. 첫째로, 한편에 생산수단의 전체(마을)에 의한 총유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 전체의 구성요소인 個의 私有가 존재한다.

그러나 個(私有)만으로써는 충분한 독립성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전체(전체의 총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의 존재, 바꿔 말하면 전체가 個(人)에 대해서 어느정도 社會保障的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個에 의한 소유가 거의 평등성을 가져 상호 심한 불균형을 갖지 않을 것, 바꿔 말하면 계층의 未分化가 지배적일 것이다.

이상이 공동체를 존립시키는 기본조건이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福武直교수도 공동체 성립의 계기를, ① 상호의존하지 않으면 생산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共同社會性, ② 外部에 대한 봉쇄성이라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어촌에 어업공동체가 출기차게 존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小商品生產의 경영구조를 지니고 있는 영세어가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촌에서 생산의 터인 어장의 총유와 그 밖의 洞有재산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데 그 主因이 있다 할 것이다.

거기에 어민의 전통묵수적이고 집단지향적인 사회의식 및 낮은 문화수준이 그것을 밑받침하고 있는 정신적 기반이라 할 것이다. 이를 조금 더 부연해 보자. 우리나라 어촌의 60%이상이 정기선편이 없거나 3일만에 한번씩 운행하는 외진 곳이며, 군청소재지로 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이 20%나 된다. 그만큼 지리적 고립성이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거기에 어업경영의 주체인 어가는 그 90%이상이 양극분해 이전의 소상품 생산적 영세어 가로서 그들은 공동어장에 공동출역하여 거기에서 얻은 생산물을 공동분배받는 공동어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거기에 우리어촌에 어업공동체가 존립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어업공동체의 존립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동체는 추상적·초현실적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역사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또한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성장·변질·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공동체로 하여금 이렇게 변질·분해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生產力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업(특히 共同體內分業)의 전개와 계층분화야말

로 결정적 요인이다. 다시말하면 어업공동체의 해체는 어업기술의 진보와 어업장비율의 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선의 대형화와 동력화, 어로장비의 기계화 및 과학화, 양·증식기술의 발달, 어업의 유통기구의 근대화 등에 의해서 한편에선 어장이 점점 확장되어 배타적 지배성이 약화되고, 다른 한편에선 어업의 경영형태가 개별화 내지 자본제화되어 어촌내부에서 계층분화가 확대되어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어촌에 어업공동체가 아직도 출기차게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안어민이 근대적·자본제적 어업만으로는 再生産을 꾸려갈 수 있으리만큼手中에 자본의 축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업공동체의 전개형태

우리는 위에서 어업공동체의 존립과 해체조건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촌에 존립하고 있는 어업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공동체는 그것이 딛고 서있는 기반의 차이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유형들은 단순한 類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어업의 기술진보 및 자본의 소요도등에 따라 分解를 보이고 있는 바, 필자는 그것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제1형태(혹은 存立形態), 제2형태(혹은 變質形態) 제3형태(혹은 分解形態)가 그것인데,

그것들은 단순한 어업의 종류나 지역차에 따른 類差가 아니라 제1형태로 부터 제2형태를 거쳐 제3형태에 이르는 사이에는 共同體의 본질이 점차 변질되고 분해되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동체의 분해도는 위에서 설명한 어업공동체 해체의 기본조건의 작용과 정비례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제1형태를 어업공동체의 「존립형태」, 제2형태를 「변질형태」, 제3형태를 「분해형태」라 명명하고자 하거니와, 이하 항을 바꾸어 각 형태의 특질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I. 어업공동체의 제1형태 (存立形態)

어업공동체의 제1형태는 黑山島의 미역 共同採取制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마을이 入戶制度에 기초하여 어업공동체로 튼튼하게 편제되어 있고,

② 그러한 촌락공동체(漁村契라는 명의로 擬制되어 있음)가 地先어장(주로 미역바위)을 총유하고 있으며,

③ 개인(各戶)은 사적으로 점취하고 있는 가택과 터밭을 포함하는 약간의 경지 및 어업생산수단(소형어선, 어구 등)만으로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不足分을 총유어장의 공동경영에 의해서 보완받고 있다.

④ 그러한 총유어장은 몇 개의 耕區로 분할되어 그것들이 班(돔)별로 매년 교체되는 이른바 定期割替制가 여행됨으로써 개인의 持場(양식장)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그 경영은 완전한 공동경영, 즉 공동생산(채취) → 공동분배로서 개별경영은 그안에서 전혀 짜트지 않고 있다. 공동경영에 참가하는 성원(마을사람)들 사이를 다스리는 기본원리는 평등이다.

⑤ 성원들의 態意性은 耕區(作)強制를 주로 하는 共同體

주고 있다. (拙著「韓國漁業經濟史研究 - 漁業共同體論」제3편 제1장 참고).

II. 어업공동체의 제2형태 (變質形態)

제2형태는 김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어업에서 주로 보이는데 그 특징은 제1형태의 ①~③항까지의 특질, 즉 入戶



規制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상이 어업공동체의 제1형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거나 와, 이로 미루어 볼때 제1형태는 중세 봉건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의 특질과 재생산구조가 그대로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어업공동체의 제1형태를 「存立形態」라 호칭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1형태의 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어업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繁茂하는 해조류와 패류의 단순채취어업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의 현행 수산업법의 「제1종공동어업권」이 뒷받침해

制度에 기초한 어업공동체가 지선의 양식장을 총유하며, 개개의 성원은 거기에 매달려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간다고 하는 점은 전적으로 동일하나, 경영형태만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제2형태에선 성원들에게 어장자체를 나누어 준다. — 제1형태에선 생산물을 분배하는 것과 비교하라. 어장자체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양식업이 채취어업에 비해서 耕作的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 성원은 이렇게 할당받은 持場에 해태발(망)을 세우고 김을 채취하며 그것을 제조·

韓國 漁業共同體의 展開形態

漁業		入戶制度	經營形態	共同體規制	漁業權의 種類	共同體의 分解度 = 展開形態
沿岸性漁業	採藻捕具業 (代表的漁業: 미역, 허 등 採藻業)	(入戶制度 嚴存強制) 基本資格: heredum의 保有漁業從事者 移入者 分家者에 對한 猶豫制度, 入戶金制의 嚴存	〈共同經營〉 △ 總有漁場 △ 渔場의 個人에의 不分割 班別定期割替 △ 共同出役·共同分配 △ 屋儲勞動의 未發生	△ 耕區強制作用 △ 基本產物 - 均等分配 : 形式的平等의 原理 △ 2大的 產物 - 能力과 必要에 따라 利用 : 實質的平等의 原理	第1種 共同漁業權	存立形態 = 第1形態
	淺海養殖業 (代表的漁業: 召養殖業)	〈入戶制度 解弛〉 基本資格: heredum의 保有漁業從事者 移入者 分家者의 유예기간 短縮, 入戶金의 形式化	〈個別經營〉 △ 總有漁場 △ 渔場의 個人에의 分割 但 未固定化, 班別個人別 定期割替 △ 個別生產·個別販賣 △ 雇傭勞動의 登場	△ 耕區強制作用 △ 基本漁場-均等分配 : 形式的均等 △ 周邊漁場 能力 따라 利用 : 個別化的 쪽	養殖漁業權	變質形態 = 第2形態
	沿岸網漁業 (代表的漁業: 焚寄抄網, 落網 등)	〈入戶制度의 解體〉 經營者의 大部分이 非地先民으로 入戶制度 解體	〈個別經營〉 △ 入戶制度의 解體와 함께 渔場의 總有制度도 解體되었으나 共同漁業權은 渔協이 保有 △ 渔協所有漁業權을 個人이 地先民의 同意를 얻어 行使 △ 個別生產·個別販賣 △ 雇用勞動 등장	△ 共同體規制 作用할 수 없음 △ 個人能力 따라 經營擴張可能	第2-3種 共同漁業權 (定置網漁業權)	分解形態 = 第3形態
遠·近海漁業		入戶制度不成立	資本制의 企業經營	共同體規制 不成立	萬人自由漁業	共同體不成立

판매하는 등 모든 경영은 자기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영위한다. 제1형태에선 생산(채취)·분배가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짐과 비교된다.

다음으로 持場을 나누는 원리는 '호당 균일하게 최고 몇 책까지 건홍할 수 있다'는 식의 형식적 평등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 것은 할당받은 양식장에 밭을 치고 거기에 부착한 원초를 채취·제조하는 데는 상당액의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어민에 따라서는 나누어 받은 밭장을 모두 건홍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할당량보다 더 건홍할 수 있는 계층도 발생하여 마을(공동체) 안에서 계층분화가 이루어져 비록 단서적이기는 하지만 貸勞動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규제도 제1

형태에 비하여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어업공동체의 제2 형태는 入戶制度와 어장의 총유라는 측면에선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운존되고 있으나, 경영면에 있어서는 個別性이 크게 확대되어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 양식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개별성이 확대되어 공동체 자체를 변질케하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 우선 해태양식은 기술적으로 개별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그것을 경영하는데는 꽤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계층을 달리하는 어가들이 공동출연식으로 출자하기에는 너무 거액이며, 반대로 그 성과는 너무 불안정(생산의 투기성) 하다는데 그 주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업공동체의 제2

형태는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拙著, 「상계서」, 제3편 제2장 참고)

Ⅲ 어업공동체의 제3형태 (分解形態)

어업공동체의 제3형태는 연안의 특종 網어업에서 보여진다. 한마디로 망어업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망·대모망·소태망 등의 '定置漁業權어업'과 분기초망·선인망·들망 등의 '제2종 공동어업권 어업', 낭장망·삼각망·걸망·부망·육수장막 등의 '제3종 공동어업권어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망어업들은 ① 배타독점적 지배, 즉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專用漁場을 생산의 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장의

총유와 그에 기초한 入戶制度 즉 어업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으면 ② 망의 설치를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지나, ③ 자본의 소요도와 그 생산성에 있어 선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혀 질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망 어업의 경우, 정부의 공동경영에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入戶制度가 분해되어 오히려 연안의 대표적인 자본제 어업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연안어종의 고갈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한편 후자, 즉 제2·3종 공동어업권 어업에 속하는 망어업들은 비록 개인이 行使契約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자기책임하에 임노동을 고용하여 영위하고 있지만, 다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地先의 어업공동체와 같은 內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어업권은 그 행사자 개인이 아닌 수산업 협동조합(어업공동체의 법적의제)이 보유하고 있고 私的 소유권의 不認定 ② 행사자는 地先民(같은 공동체성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③ 그가 행사계약을 맺기기에 앞서 하나의 선행요건으로서 他 지선민(공동체의 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아직도 지선의 어업공동체와 같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안의 망어업들이 비록 개별적으로 경

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업공동체의 外被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限에서는 우리는 어업공동체의 殘影 즉 分解形態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안의 망어업의 경영면에선 우리와 日本의 사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즉, 일본에선 대부망과 같은 자본의 소요도가 큰 정치망어업에 있어서도 아직도 한 마을 사람들이 「生產組合」이라는 임의의 공동조직을 구성하여 舉村의 으로 공동경영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선 필자는 일본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면의 여유가 없어 후일로 미루고자 하거니와 요컨데 일본의 어촌은 근대화의 진전도와는 관계없이 공동체가 강인하게 존속·기능하고 있으며, 그것이 모체가 되어 복지어촌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拙稿「韓日漁業共同體의 比較研究」行路社 참고)

이상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온 우리나라의 어업공동체의 전개 형태와 그 기반이 되는 어업, 그리고 어업권의 종류 및 入戶制度의弛援度 등을 하나로 묶어 보면 표와 같다.

맺는말 - 근대화와 어업공동체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어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어업공동체를 간략하게 스케치해 보았다. 동시에 그것들이 왜 끊임없이 존속하는가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제 근대화와 어업공동체의 관계, 즉 근대화의 진전과정에서 어업공동체는 해체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拙見을 말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오늘날 공동체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공동체를 전근대사회 諸生產樣式의 기본적 구성으로 보고, 따라서 그것은近代化, 즉 자본제화가 확립되면 해체되어야 할 운명의 것으로 보는 견해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인간사회를 관류하는 초역사적 기본구성으로 보고, 공동체는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존속하지 않으면 아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도성장의 모순과 현대의 혼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판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공동체관은 「격동의 60년대」에 이어 「붕괴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화된 공동체관으로서 공동체야 말로 경제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본의 공격에 대하여 인간주의를 지켜나가게 할 거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공동체관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업공동체야 말로 우리의 풍요롭고(소득증대), 안정적인(소득의 안정과 평등) 어촌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어민들의 태반은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근대적인 자본제 어업으로 홀로설 수 있는 어업자본가가 되지 못하고 연안의 공동어장에 蟄集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영세어가라는 점이요, 둘째로, 오늘날 어업의 발전방향은 200 해리 실시이후 원양어장에서 상실한 어장을 연안어장의 집약화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른바 자

원관리형 어업 내지 재배어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어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면에선 어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출자·공동출역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유통면

에서는 공동출하를 통한 가치의 실현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애와 평등을 본질로 하는 어업공동체가 아니고서 누가 이 일을 관장하고 추진할 것인가!

❾

3 前提的인 條件 實態把握 아쉽다

申 順 浩 〈木浦大 教授〉

머리말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개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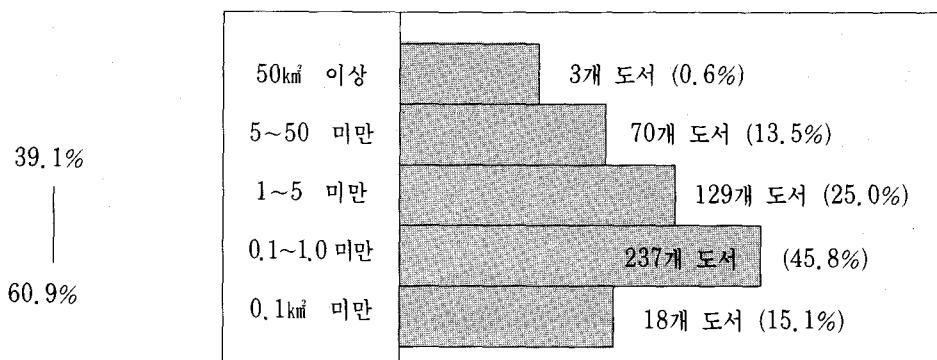
관한 '60년대 이후의 일반적 인식은 총량적 경제개발에 그 촇점이 맞춰져왔다. 이는 우리

나라가 처한 자본의 부족과 생산기반의 미확보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여지

〈표 1〉

면적규모별 도서

기준 : 1984년 말



자료 : 내무부 도서지, 1985.